

생활 속의 소방 법률 상식

(다중이용업소 관계인 편)

①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]

준수사항

다중이용업주는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
2.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
3. 방화문 등 피난·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
4.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의무
5.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

위 반 시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②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, 시행규칙 제5조]

준수사항

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
【교육 시기】

- 신규교육 : 업주 (지위승계, 완공신고전), 종업원 (종사하기전)
- 보수교육 : 신규, 보수교육을 받고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일까지

【교육 방법】

- 집 합 : 소방서 집합교육 (의왕소방서 홈페이지 게재)
- 사이버 :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 교육 신청 (<http://www.kfsi.or.kr>)

위 반 시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③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·관리

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]

준수사항

1.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2.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·차단 행위 금지

위 반 시

【1년 이내 2회 이상】 50만원 과태료 부과
【고장 상태 등 방치】 100만원 과태료 부과

<유지관리 주요 소방시설 현황>



소화기



비상벨설비



자동화재탐지설비



완강기등 피난기구



유도등·유도표지

④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

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]

준수사항

1. 비상구, 방화문 폐쇄·훼손 금지
2. 비상구, 방화문 주위 물건 적치 금지
3. 비상구,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 금지
4. 비상구, 방화문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

위 반 시

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

<비상구 등 폐쇄·훼손 중점 단속 사항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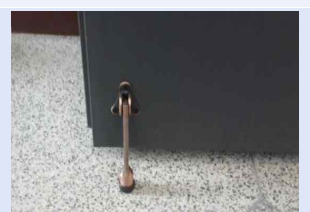
비상구, 피난계단 등
장애물 적치



고의적 방화문
개방유지



방화문 도어클로저
임의 탈거



방화문 도어스토퍼
(말발굽)설치

⑤ 비상구 추락방지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2]

준수사항

다중이용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을 (표지 · 경고 장치 · 쇠사슬) 갖추어야 한다.

위 반 시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<비상구 추락방지 설치시설>



추락위험 표지



경고음 장치



쇠사슬(안전로프)

⑥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

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]

준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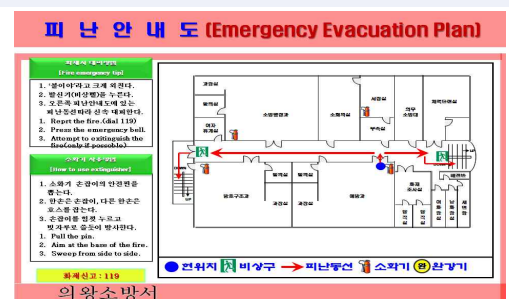
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· 피난통로,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.

위 반 시

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

<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>

1.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
2.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3. 소화기,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
4. 피난 및 대처방법



⑦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]

준수사항

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.

위 반 시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⑧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2]

준수사항

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대상은 천장(반자속)까지 구획하여야 한다.

-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

위 반 시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]

준수사항

다중이용업주,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로 인하여 인명·재산 피해 책임을 질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
위 반 시

10만원 ~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미가입 일수에 따라 상이)